

의안번호	제2970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7. 4.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70호
----------	--------

제출연월일: 2025. 7. 4.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용 기간 및 연장 기준을 정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이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하고자 함. 아울러, 공설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계약(이용) 기간 종료 이후 유골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등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제5조, 안 제7조~제11조, 안 제13조·제14조·제16조)

- “화장장”→“공설화장시설”, “봉안당·봉안묘”→“공설봉안시설”

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1) 무연분묘 및 무연유골,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안치 기간 삭제

2) 사용기간의 연장과 횟수에 관한 사항

다. 사용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

라.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검토결과: 의견없음[복지지원과-19095호(2025.05.19.)]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930호

가) 예고기간: 2025. 5. 20. ~ 2025. 6. 09.(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성군이”를 “고성군에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공설 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등 시신을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하며 명칭은 장기공설공원묘지라 한다.
3. “공설 화장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명칭은 고성군공설 화장장이라 한다.
4.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한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은 고성군공설봉안당 및 장기공설봉안묘라 한다.

제3조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제4조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봉안당”을 “공설봉안시설”로,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최초 사용기간은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설묘지: 15년. 연장기간은 15년씩 세 차례까지 가능

2. 공설봉안시설: 15년. 연장기간은 15년으로 한 차례만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사시설”을 각각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화장장 사용료 지원)”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 화장장”을 “공설화장시설”로, “화장장을”을 “화장시설을”로, “화장장 사용료”를 “화장시설 사용료”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화장장 사용료 지원 제외)”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제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용기간”을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경우”를 “경우 또는 연장 후 만료된 경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용권이 소멸된 유골처리) 군수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 소멸 후 1년 이내에 기간 연장 신고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제1항 중 “봉안당, 공설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설묘지 및 봉안당”을 “공설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봉안당”을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봉안실의 설치 및 관리)”를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봉안당”을 각각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제16조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및 연장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을 최초로 사용 중이거나 연장하여 사용중인 경우에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중인 기간만료일까지를 최초의 사용기간으로 본다.

공설 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고성군공설 화장장	고성군 상리면 장치로 220-163	
고성군공설봉안당	고성군 상리면 장치로 220-163	
장기공설봉안묘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산209-2번지	
장기공설공원묘지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산209-2번지	

공설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고성군공설화장장	고성군 상리면 장치로 220-163	
고성군공설봉안당	고성군 상리면 장치로 220-163	
장기공설봉안묘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산209-2번지	
장기공설공원묘지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산209-2번지	

[별표 2] <현행>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화장장 사용료>

(단위 : 원)

내 용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관 내	관 외	
15세 이상	1구당	50,000	400,000	
15세 미만	1구당	30,000	200,000	
개장 유골	1구당	25,000	150,000	
죽은 태아	1구당	18,000	90,000	
적 출 물	1kg당	1,500	7,500	

<봉안당 사용료>

(단위 : 원)

내 용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관 내	관 외	
유연유골	1구/15년	100,000	300,000	
무연유골	1구/10년	75,000	225,000	

<매장묘지 사용료>

(단위 : 원)

내 용	단 위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1구당 (8.8㎡)	구당	400,000	150,000 (15년기준)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내 용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관 내	관 외	
15세 이상	1구당	50,000	400,000	
15세 미만	1구당	30,000	200,000	
개장 유골	1구당	25,000	150,000	
죽은 태아	1구당	18,000	90,000	
적 출 물	1kg당	1,500	7,500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내 용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관 내	관 외	
유연유골	1구/15년	100,000	300,000	
무연유골	1구/5년	75,000	225,000	

<공설묘지 사용료>

(단위 : 원)

내 용	단 위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1구당 (8.8㎡)	구당	400,000	150,000 (15년기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u>고성군이</u> 설치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고성군에</u>
		<u>서</u>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u>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u>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u>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u>		
		<u>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u>		
		<u>안시설 등 시신을 장사하거나</u>		
		<u>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u>		
		<u>시설을 말한다.</u>		
2. “화장장”이란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u>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u>		
		<u>하는 묘지를 말하며 명칭은</u>		
		<u>장기공설공원묘지라 한다.</u>		
3. “봉안당”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공설화장시설”이란 군에서		
		<u>설치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u>		
		<u>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명칭은</u>		
		<u>고성군공설화장장이라 한다.</u>		
4.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5. “공설묘지”란 사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공구역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자 범위) ① 관외거주자 중 봉안당의 사용은 등록기준지가 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 ⑤ (생략)

제6조(사용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무연분묘 및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이 경과한 장사시설

4.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한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은 고성군공설봉안당 및 장기공설봉안묘라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
-----.

제4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

-----.

제5조(사용자 범위) ① -----
---- 공설봉안시설-----
----- 사람에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최초 사용기간은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설묘지: 15년. 연장기간은 15년씩 세 차례까지 가능

의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용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7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생 략)

② (생 략)

제9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① 군 화장장이 시설공사 등으로 가동할 수 없어 고성군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공설봉안시설: 15년. 연장기간은 15년으로 한 차례만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

② 공설장사시설 -----

---.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공설장사시설-----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① 공설화장시설-----

-- 화장시설을 -----
----- 화장시설 사용료-----.

② ~ ④ (생략) 제9조의2(<u>화장장 사용료 지원 제외</u>) (생략) 제10조(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u>장사시설</u>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u>사용기간</u>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u><신설></u>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u>분안당, 공설묘지</u>에 안치한 후 사용기간 내에 유골을 반환하는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u>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제외</u>)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① ----- <u>공설장사시설</u>-----. 1. ~ 3.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u> --- <u>경우 또는 연장 후 만료된 경우</u> 제10조의2(<u>사용권이 소멸된 유골처리</u>) 군수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 소멸 후 1년 이내에 <u>기간 연장 신고 또는 유골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u>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u>공설장사시설</u>-----
---	---

경우 사용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② (생략) 제13조(시설의 사용 등) ① 군수는 <u>공설묘지 및 봉안당</u>을 사용 승인 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② <u>봉안당</u> 봉안실의 안치단에 연변을 붙여 관리하고 연변순서에 따른다. 제14조(<u>봉안실의 설치 및 관리</u>) ① <u>봉안당</u>의 봉안실은 유연과 무연으로 구분하여 봉안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u>봉안당</u>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넣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변상 등) <u>장사시설</u>의 사용자가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의 사용 등) ① ----- -- <u>공설장사시설</u>----- ----- ----- ---. ② <u>공설봉안시설</u> ----- ----- -----. 제14조(<u>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u>) ① <u>공설봉안시설</u>----- ----- -----. ② <u>공설봉안시설</u>-----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변상 등) <u>공설장사시설</u>-- ----- ----- ----- -----.
---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시행중인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발의 의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천 미 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 제2항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설묘지·사설묘지의 설치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가. ~ 바. 생략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 차. 생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